

## 1. 개정이유

경륜·경정법 제2조(정의) 조문의 어려운 한자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경륜·경정법률이 개정(법률 제16587호, 2019.11.26. 일부개정)됨에 따라 경륜·경정법 시행규칙을 정비함.

## 2. 주요내용

경륜경정법률 제2조(정의) 문장의 용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‘적중’을 ‘경주 결과를 맞힌’으로, ‘구매한 자’를 구매한 사람‘으로, ‘발매수득률’을 ‘발매이익률’로 개정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합의 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3. 12 . ~ 04. 21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## 경륜·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경륜·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 후단 중 “적중”을 “경주결과를 맞힌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의 후단 중 “구매한 자”를 “구매한 사람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발매수득률의 통지”를 “발매이익률의 통지”로 하고 내용  
의 “발매수득률(發賣收得率)”을 “발매이익률(發賣利益率)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(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6조(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)<br>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2의 산식(算式)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승자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자에 대한 <u>적중</u> 단위 승자투표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6조(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)<br>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2의 산식(算式)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승자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자에 대한 <u>경주 결과를 맞힌</u> 단위 승자투표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7조(경주의 불성립) ① (생략)<br>1. (생략)<br>2. (생략)<br>3. (생략)<br>4. (생략)<br>②경주사업자는 경주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승자투표권을 <u>구매한</u> <u>자</u> 에게 알려야 한다. | 제17조(경주의 불성립) ① (생략)<br>1. (생략)<br>2. (생략)<br>3. (생략)<br>4. (생략)<br>②경주사업자는 경주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승자투표권을 <u>구매한</u> <u>사람</u> 에게 알려야 한다. |
| 제18조( <u>발매수득률</u> 의 통지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수득률(發賣收得率)을 정하면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8조( <u>발매이익률</u> 의 통지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<u>발매이익률</u> (發賣利益率)을 정하면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